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확대〉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85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7.
3. 회 부 일 : 2024. 10.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위반행위)에 관한 분쟁의 상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 ----- -----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u>조정</u> <u><신 설></u>	1. ----- ----- <u>조정 및 상담</u> 1의2. <u>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u> <u>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u> <u>교육·홍보 등의 지원</u>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사업으로 분쟁의 조정, 시장·산업에 관한 조사·분석,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등을 정하고 있을 뿐,¹⁾ 공정거래와 관련한 상담·교육·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와 달리, 가맹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련 법령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수·홍보 업무를 부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²⁾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³⁾은 각 분야에서 법 위반 예방을

-
- 1)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2)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연수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 ⑥ (생략)
- 3)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④ (생략)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하면서, 그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이를 근거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⁴⁾와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⁵⁾에서는 법 위반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가맹점사업자·대리점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을 각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

-
- 4)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2.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창업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
 5.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
 7.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완충 창구 역할
 8.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확대에 관한 업무
 9.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10. 기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 5)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점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자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 공급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소송지원
 5. 공급업자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협상중재 및 정기회의체 마련을 통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
 6.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확대에 관한 업무
 7.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8.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9.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하고 있으며, 현재 그 위탁사업자(가맹종합지원센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임.

□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 상담·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임.

□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사업 수행의 체계와 책임성 측면임. 가맹·대리점 분야는 분쟁 상담·교육·홍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로 부여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의 귀속⁶⁾ 등에 관한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률안에 대한 고려임.

정부는 2024년 8월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 조정의 체계적

6) 현행 위탁의 경우 사업의 책임은 위탁기관인 정부에게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법정업무로 규정할 경우 그 책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게 됨.

개선을 목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법률안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를 개정안의 내용과 더불어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정부제출 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정부제출안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 ----- ----- ----- -----.	제6조(업무) 조정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u>조정</u>	1. ----- ----- ----- <u>조정 및 상담</u>	1. <u>공정거래관련분쟁의 조정 및 상담</u>
<신 설>	<u>1의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u>	2. <u>공정거래관련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u>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u>공정경쟁에</u> 관한 조사 및 분석	<현행과 같음>	3. ----- - <u>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공정경쟁에</u> -----

4. 사업자의 거래 관 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72조제3호와 같음>
5. 제90조제7항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위탁받은 제89 조제3항에 따른 동의 의결의 이행관리	<현행과 같음>	6.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 및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제97조의2제2항 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현행과 같음>	7. 다른 법령에서 조 정원에 위탁하거나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 조정 등의 업무
7. 공정거래와 관련 된 제도와 정책의 연 구 및 건의	<현행과 같음>	5. ----- ----- 국제 협력
8. 그 밖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위탁받 은 사업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공정거래 관련분쟁의 해결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

문 의 처

02)6788-5109